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

2016년 7월

김영훈 실장 · 이수영 팀장

1 조사목적

- 공공기관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¹⁾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출연율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결정.
-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편법적인 임금인상이라는 비판은 제기되고 있음.

- 출연기준을 새로이 정비하여 공공기관의 방만운동을 예방하겠다는 정부 발표²⁾에도 불구하고, 「2015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기금출연 기준을 사실상 상향조정함으로써 사실상의 임금인상을 용인했다는 평가를 받음.
-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Alío)’에 공시된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현황(2015년 기준)을 살펴보고 개선내용을 제시하고자함.

2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실태조사

(1) 제도운영 현황 및 출연액

- 2015년 기준 전체 공공기관³⁾ 중 93개(29.4%)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중임.
- 기금을 운영 중인 93개 기관 중 54개(58.1%)는 2년 연속 출연

【표 1】 2011년-2015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규모

단위: 억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1835	2180	1849	815	2227
공기업	994	852	606	258	1433
준정부기관	144	190	163	111	133
기타공공기관	698	1138	1080	446	661

자료=알리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 1) 제61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①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 ②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 2) 기획재정부, 2011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 마련(보도자료), 2010.11.16.배포
- 3) 2015년 전체 공공기관은 총 316개

- 2015년 93개 공공기관 기금 수혜대상자 1인당 평균 출연액은 89만4000원.
- 반면, 상용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규모기업의 1인당 출연액은 25만5600원(2014년도 기준). 민간대비⁴⁾ 공공기관의 기금현황(2015년도 기준)을 살펴보면, 평균기금액 기준으로는 2.1배, 1인당 평균 출연액은 3.5배에 이름(【표 2】 참고).

【표 2】 공공/민간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현황 비교

구분	공공기관(A) ⁵⁾	민간기업(B) ⁶⁾	차이(A/B)
기금원금	1조8673억2741만 원	6조2476억 원	0.3배
기금설치기관 수	93개소(29.4%)	625개소(21.5%)	0.15배
평균기금액	200억7878만9000원	99억9600만 원	2.1배
1인당 평균출연액	89만4000원	25만5600원	3.5배

자료=고용노동부 정보공개청구 답변자료 및 고용통계

(2) 정부지침 변경으로 인한 출연(가능)액 변동조사

- 기재부는 기존 출연기준을 일부분 상향조정 한 「2015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내용을 「2016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도 유지 (【표 3】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예산편성지침 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 변화

2010년-14년 출연기준		→	2015년 출연기준		→	2016년 출연기준	
1인당 기금누적액	출연율		1인당 기금누적액	출연율		1인당 기금누적액	출연율
500만원 이하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5	→	500만원 이하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5	→	변동사항 없음	
500만원 초과 ~2000만원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2	→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4	→		
		→	1000만원 초과 ~1500만원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3	→		
		→	1500만원 초과 ~2500만원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2	→		
2000만원 초과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0	→	2500만원 초과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0	→		

4) 민간기업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중 기업규모기준 대규모기업집단(상용근로자 300인 이상)에 한함.

5) 2015년도 기준

6) 2014년도 기준

■ 이에 따라, 2015년도에는 사내복지기금을 소유한 전체 42.8%(39개)가 결국 이전 기준적용시보다 출연액을 늘릴 수 있게 된바 있음

- 이런 현상은 2016년도에도 나타나, 2014년 이전 기준에 따르면 출연할 수 없는 6개 기관이 2016년도 지침에 따라 출연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4년도 기준으로 세전순이익의 2%만 출연할 수 있었던 29개 기관은 3~4%까지 출연할 수 있게 됨(【표 3】 참고).

【표 4】 기준변동으로 인한 적용기관수 변화(2015년도 기준)⁷⁾

출연율	기관수	
	2014년도 지침적용	2015년도 이후 지침적용
세전순이익의 5%	44	44
세전순이익의 2% 이상	42	45
세전순이익의 0%	6	3

- 기준상한 확대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게 된 곳은 이미 상당한 액수의 기금을 축적하여 더 이상의 출연할 수 없었던 3개 기관. 1인당 기금누적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기금출연이 금지되었으나 이번 지침개정으로 세전순이익의 2%를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게 된 것.

■ 금액으로 확인하면, 2015년도 이전 지침 기준과 2015년도 이후 지침 기준별로 2016년도 출연액을 책정한다고 가정 시, 기관에 따라 최대 195억5273만 5000원이 증가함(【표 5】 참고).

- 지침 변동으로 총 30개 기관이 2016년도 기금출연 가능액의 증가 금액만 총 974억3026만9000원에 이릅니다

【표 5】 지침상 출연율 기준 변동으로 인한 출연가능액 *2016년도 출연액 책정 가정

단위: 천원

기관명	2015년도 이전 지침 적용 시(A)	2015년도 이후 지침 적용 시(B)	차이(B-A)	비고
한국수력원자력(주)	39,105,471	58,658,206	19,552,735	
중소기업은행	24,377,090	36,565,635	12,188,545	
한국전력공사	20,530,918	30,796,377	10,265,459	
예금보험공사	-	7,613,627	7,613,627	
신용보증기금	7,571,849	15,143,697	7,571,849	
한국마사회	5,151,270	10,302,540	5,151,270	

7) 2015년도 1인당 기금누적액 기준

기관명	2015년도 이전 지침 적용 시(A)	2015년도 이후 지침 적용 시(B)	차이(B-A)	비고
(주)강원랜드	10,008,042	15,012,064	5,004,021	
한전KPS(주)	4,368,690	8,737,379	4,368,690	
한국수자원공사	7,858,036	11,787,054	3,929,018	부채중점관리기관
한국가스공사	-	3,868,280	3,868,280	
한국주택금융공사	4,686,947	7,030,421	2,343,474	
한국항공공사	4,399,751	6,599,627	2,199,876	
한국동서발전(주)	4,172,271	6,258,406	2,086,135	부채중점관리기관
한국서부발전(주)	3,561,595	5,342,393	1,780,798	부채중점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	1,566,864	1,566,864	
그랜드코리아레저(주)	3,063,197	4,594,796	1,531,599	
한국도로공사	2,338,069	3,507,103	1,169,034	부채중점관리기관
한국중부발전(주)	2,085,091	3,127,636	1,042,545	부채중점관리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873,511	1,747,021	873,511	
한국투자공사	1,343,385	2,015,078	671,693	
한국남부발전(주)	1,231,934	1,847,900	615,967	부채중점관리기관
인천항만공사	454,531	909,062	454,531	
한국지역난방공사	365,272	730,545	365,272	
(주)한국가스기술공사	325,565	651,129	325,56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56,387	512,775	256,387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239,866	479,732	239,866	
한국언론진흥재단	372,524	558,787	186,262	
해양환경관리공단	126,978	253,956	126,978	
한국감정원	158,168	237,252	79,08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336	2,672	1,336	
총 30개 기관	149,027,743	246,458,012	97,430,269	

■ 실제로 지난 2014년 회계자료를 기준으로, 지침변경 이전과 이후 2015년도 출연가능액을 조사한 결과 총 25개 기관이 총 462억3053만 원이 증액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남.

- 추정을 기반으로 실제 2015년도 실 기금출연액을 살펴보니 총 33개 기관에서 지침변경 이전 기준 적용액보다 총 1396억6363만5000원이 증액출연(【표 6】참고, 2015년도 기금신설기관 제외)

【표 6】 지침상 출연을 기준 변동으로 인한 출연가능액 및 실 출연액 비교(2015)

단위: 천원

기관명	2015년 출연가능액 (A 자침변경이전)	2015년 출연가능액 (B 자침변경이후)	증감(B-A)	2015년 실 출연액(C)	차이(C-A)
그랜드코리아레저(주)	3,737,020	5,605,531	1,868,510	4,594,790	857,770
도로교통공단	-	-	-	7,000	7,000
인천항만공사	359,417	718,834	359,417	909,062	549,645
(주)한국가스기술공사	354,321	708,642	354,321	651,000	296,679
중소기업은행	21,356,924	32,035,385	10,678,462	36,600,000	15,243,076
코레일테크(주)	61,140	61,140	-	74,911	13,771
한국가스공사	-	1,448,609	1,448,609	2,000,000	2,000,000
한국감정원	-	-	-	150,000	150,000
한국공항공사	3,116,070	6,232,139	3,116,070	6,050,000	2,933,930
한국남동발전(주)	3,402,476	3,402,476	-	9,622,923	6,220,447
한국남부발전(주)	1,389,424	2,084,137	694,712	1,847,900	458,47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17,314	634,628	317,314	480,000	162,686
한국농어촌공사	1,839,526	1,839,526	-	2,101,000	261,474
한국도로공사	136,054	204,080	68,027	3,507,000	3,370,946
한국동서발전(주)	607,265	910,898	303,633	6,258,000	5,650,735
한국디자인진흥원	9,799	9,799	-	14,618	4,819
한국서부발전(주)	1,748,487	2,622,730	874,243	5,342,000	3,593,513
한국수력원자력(주)	-	-	-	54,500,000	54,500,000
한국수자원공사	9,000,610	13,500,915	4,500,305	11,780,000	2,779,390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	-	202,000	202,000
한국언론진흥재단	-	-	-	300,000	300,000
한국예탁결제원	-	1,292,270	1,292,270	600,000	600,000
한국인터넷진흥원	-	-	-	3,644	3,644
한국자산관리공사	1,583,997	1,583,997	-	2,420,000	836,003
한국전기안전공사	887,929	887,929	-	903,000	15,071
한국전력공사	-	-	-	30,829,142	30,829,142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2,557,736	2,557,736	-	3,810,600	1,252,864
한국중부발전(주)	413,980	620,970	206,990	3,127,606	2,713,626
한국투자공사	645,590	1,291,180	645,590	2,400,000	1,754,410
한전KDN	484,199	484,199	-	892,262	408,063
한전KPS(주)	9,901,570	9,901,570	-	10,385,000	483,430
한전원자력원료주식회사	923,651	923,651	-	2,071,392	1,147,741
해양환경관리공단	110,500	220,999	110,500	173,783	63,283
합계	64,944,998	91,783,970	26,838,972	204,608,633	139,663,635

(3)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의 문제 사례

■ 「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출사업 예산편성 시,

- ①급여성 복리후생비는 기금을 포함한, 복리후생비용으로 편성될 수 없으며 ②대 학생 자녀 학자금은 무상 지원 불가. ③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라 개인이 금융기관에 부담해야 할 주택구입·임차관련 이자비용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무상으로 지원할 수 없음.

- 그러나 지난 2011년,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및 기재부 지침 상 기금사업 범위에 대한 불명확성 지속. 이에 따른 제도 개선이 미비한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음.

【사례 1】 신용보증기금의 급여성 복리후생비 제도(가족친화제도 지원금⁹⁾)

단위: 천원, 명

연도	구분	고용형태	금액	수혜인원	조건	
					대상	최대지원 한도
2015	무상지급 (용도사업)	정규직	626,320	2,152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직원	710
		무기계약직	22,710	107		
		비정규직	2,230	15		
2014	무상지급 (용도사업)	정규직	603,820	2,096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직원	710
		무기계약직	23,770	110		
		비정규직	1,660	13		
2013	무상지급 (용도사업)	정규직	754,610	2,072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직원	710
		무기계약직	13,570	110		
		비정규직	2,600	18		

8) 국민권익위 보도자료,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개선’, 국민권익위, 2011.9

9)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기준(2015.12.31., 개정(13))」 제10장 가족친화제도(신설 2013.12.24.)

제48조(대상자) 가족친화제도의 지원 대상은 현재 근속기간 2년 이상인 직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9조(지원기준) 배우자·자녀의 부양가족 인원 수 및 본인과 자녀의 연령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제50조(지원금액) ① 가족친화제도에 따른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만40세 이상 직원: 연간 100천원

2. 만40세 미만 직원: 연간 200천원

3. 부양가족(배우자): 연간 30천원

4. 부양가족(만11세 이하 자녀): 자녀 1인당 연간 30천원

② 가족친화제도에 따른 지원 금액은 매년 1월 1일 지급한다.

③ 배정일이 휴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휴일이 아닌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51조(기타사항) ①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재직 중인 직원에 한하여 운용한다. 다만, 부양가족에 대해 지원 시 휴직자를 포함하여 지원한다.

② 만9세 이하 자녀를 부양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연간 450천원을 추가 지원한다.

③ 근속기간 2년 미만 직원에 대하여는 연간 50천원을 지원한다.

④ 부부직원의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은 여직원에게만 지급한다.

④ 가족친화제도와 관련하여 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인사부장이 정한다.

【사례 2】울산항만공사의 기념품비 과다지급 및 GWP비 지급

<기념품비>¹⁰⁾

단위: 천원, 명

연도	구분	고용형태	상세내역	금액	수혜인원	조건	
						대상	최대지원 한도
2015	무상지급 (용도사업)	정규직	창립기념품	18,200	94	정규직	200
			근로자의 날 기념품	27,635	93	정규직	300
		무기계약직	창립기념품	2,000	10	무기계약직	200
			근로자의 날 기념품	3,000	10	무기계약직	300
2014	무상지급 (용도사업)	정규직	창립기념품	18,600	93	정규직	200
			근로자의 날 기념품	25,500	85	정규직	300
		무기계약직	창립기념품	1,800	9	무기계약직	200
			근로자의 날 기념품	2,700	9	무기계약직	300
		비정규직	창립기념품	200	1	비정규직	200
			근로자의 날 기념품	300	1	비정규직	300
2013	무상지급 (용도사업)	정규직	노조창립기념품	24,600	82	정규직	200
			근로자의 날 기념품	25,500	85	정규직	300
		무기계약직	노조창립기념품	3,300	11	무기계약직	200
			근로자의 날 기념품	3,300	11	무기계약직	300
		비정규직	노조창립기념품	300	1	비정규직	300

10)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2014.12.29. 개정)」 제2절 근로자의 날 및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등 기념품(상품권)지원

제28조(선물 및 상품권 지원) 기금은 정관 제33조 제1항 제4호 아목에 의거 근로자의 날 및 노동조합 창립기념일에 선물 또는 상품권을 지급한다.

제29조(지급기준) ① 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포함)로 하며, 휴직·정직중인 자는 제외한다.

② 지급금액은 직원당 ‘근로자의 날 30만원’, ‘울산항만공사 창립기념일 20만원’ 을 한도로 지급한다.

③ 지급일, 지급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30조(지급대상) 부부직원에 대하여는 2인 모두 지급한다.

<GWP비>¹¹⁾

단위: 천원, 명

연도	구분	고용형태	금액	수혜인원	조건	
					대상	최대지원 한도
2015	무상지급 (용도사업)	정규직	4,950	99	정규직 직원가족	50
		무기계약직	500	10	무기계약직 직원가족	50
2014	무상지급 (용도사업)	정규직	4,750	95	정규직 직원가족	50
		무기계약직	500	10	무기계약직 직원가족	50
		비정규직	100	2	비정규직 지원가족	50
2013	무상지급 (용도사업)	정규직	9,200	92	정규직 직원가족	100
		무기계약직	1,100	11	무기계약직 직원가족	100
		비정규직	100	1	비정규직 지원가족	100

※ 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지급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 예산으로 편성되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됨

3 결론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림자 월급’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공공기관의 임금인상이 정부의 통제를 받는 상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편법적인 임금인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미 공공기관의 1인당 출연액이 민간부분보다 높은 만큼 향후 출연률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민간기업과 달리, 독점사업을 영위하는 공공기관이 민간과 같은 수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함.

11)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2014.1.7. 개정)」 제33조(기금법인의 사업) 1항4호 아목에 근거함

① 기금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수익금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4.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

아. 회사 창립일 및 근로자의 날 등 기념품 지급, 설추석 등 명절 선물 또는 상품권 지급 (이하생략);

일반적으로 GWP는 좋은일자리기업(Great Work Place)이라는 말로 통용